

2022 서브노트(객세 및 세무회계 목차) 정오표(4) - 7. 29. 현재

I. 수정사항 개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2022년 6월 말에 개정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관련 납세의무자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신탁은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투자·운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통제·지배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유에 추가함

(2)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확대

- ①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중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을 20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포장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 ② 커피·코코아두 등을 수입시 20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3)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한도 적용률을 기존 적용률에서 10%p 상향 조정함

II. 수정사항

| Page | 행 | 수 정 전 | 수 정 후 | | | |
|------|------------------|---|---|------|-------|-------|
| 3-9 | 상21 |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 | ~·소규모재건축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 | | | |
| | 상24 |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인 ~) | ~·소규모재건축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자인 ~) | | | |
| | 상28 | < 추 가 > | 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 | | | |
| 3-53 | 상17 | ~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판매: 과세 | ~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판매: 과세(2023년말까지는 면세) | | | |
| 3-58 | 상9 | 미가공 식료품(비식용은 과세), ~ | 미가공 식료품(커피·코코아두* 및 비식용은 과세), ~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커피·코코아두는 면세함. | | | |
| 3-94 | 상10 | 구 분 | 구 분 | | | |
| | | 적용률 | | 적용률 | | |
| | | | 음식점업 | 음식점업 | 이외 업종 | 이외 업종 |
| | | 개인사업자 |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65% | 55% | 75% |
| | |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 60% | 45% | 70% | 55% |
| |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 50% | 45% | 60% | 55% | |
| | 법인사업자 | 40% | 40% | 50% | 50% | |
| | 하11 | (2) 확정신고시: $\text{Min}[\text{㉠}, \text{㉡}] - 2 = 1.13$ 공제 | (2) 확정신고시: $\text{Min}[\text{㉠}, \text{㉡}] - 2 = 1.92$ 공제 | | | |
| | 하9 | ㉡ 한도: $(200+200) \times 40\% (\text{법인가정}) \times \frac{2}{102} = 3.13$ | ㉡ 한도: $(200+200) \times 50\% (\text{법인가정}) \times \frac{2}{102} = 3.92$ | | | |
| 3-96 | 상17 | 구 분 | 구 분 | | | |
| | | 적용률 | | 적용률 | | |
| | | 개인사업자 | 1억원 과세표준이 4억원 이하인 경우 | 55% | 65% | |
| | | | 1억원 과세표준이 4억원 초과인 경우 | 45% | 55% | |
| | | 법인사업자 | 40% | 50% | | |
| | 하10 | 1. 1기 공제액: $\text{Min}[\text{㉠}, \text{㉡}] = 3.92$ | 1. 1기 공제액: $\text{Min}[\text{㉠}, \text{㉡}] = 4.9$ | | | |
| | 하8 | ㉡ $500 \times 40\% (\text{법인 가정}) \times \frac{2}{102} = 3.92$ | ㉡ $500 \times 50\% (\text{법인 가정}) \times \frac{2}{102} = 4.9$ | | | |
| | 하7 | 2. 2기 공제액: $\text{Min}[\text{㉠}, \text{㉡}] - 3.92 = 3.92$ | 2. 2기 공제액: $\text{Min}[\text{㉠}, \text{㉡}] - 4.9 = 4.9$ | | | |
| | 하5 | ㉡ $(500+500) \times 40\% \times \frac{2}{102} = 7.84$ | ㉡ $(500+500) \times 50\% \times \frac{2}{102} = 9.8$ | | | |